

국세환급결의(결정)통보서

단위 : 원

「국세기본법」 제51조(「소득세법」 제85조, 제117조, 「법인세법」 제71조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9조 등 규정에 따라 ()건 금()원을 환급결의(초과결정) 하였기에 통보합니다.

발신 : 과장

수신 : 과장

통 보 번 호		통 보 일 자
환 급 받 는 자	성 명 (대 표 자)	외 명
	상 호 (법 인 명)	
	주인(사업자) 등 록 번 호	
	주 소 지 (사 업 장)	
환 급 할 세 액	본 세	
	()세	
	농 어 촌 특 별 세	
	계	
수 보 일 자		

※ 부과과장이 징세과장에게 환급통보 시 징세과장이 환급금 결정·지급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(총당, 양도 등)을 기록하는 란

붙임 : 환급금 결정내역(전산운영조직에 의한 통보 가능)

364mm×257mm(백상지 70g/m²)

- ※ 환급구분 : 01. 쟁송에 의한 환급 02. 직권경정 03. 착오이중납부 04. 공제초과
 05. 부가세법(조기환급) 06. 부가세법(일반환급) 07. 감면기타
 08. 배분순위착오 09. 교부청구부당 10. 2차납세의무 지정취소